

##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65
----------	------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을 하남시민으로 한정함(안 제2조)
- 나. 위기상황 인정 사유 명시(안 제3조)
- 다. 예산 확보 근거 및 준용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 상황의 기준)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국고지원 사업)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5년 7월 20일 ~ 8월 3일(15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가. 부서협의 기간 : 2015년 7월 20일 ~ 8월 3일(15일간)
- 나. 협의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관련 : 의견없음
  - 입안부서 내 의견 반영 : 조례안 제3조제3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급여체제로 해소되는 사항이므로 삭제

###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복지그늘발굴팀

##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하남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민”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하남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지 근
	팀 장 직위·성명	복지자원관리팀장 서 원 숙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서 원 숙 (790-6101)

《관계법령 발췌서》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